
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

2020. 7.



문화체육관광부



목 차



1.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	1
2.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	7
3. 작가팀 구성 및 운영	8
4. 주민 참여	11
5. 이행점검	12
6. 성과 및 작품 관리	13
7. 홍보	14

1

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

□ 기본방향

-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취지를 바탕으로, 그간 경험 등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발전된 방식 추진
 - 주민의 참여·소통,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과 일상 기반
 -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,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재정립
- 전국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 제고
- 기본적인 사업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,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 * 대상지, 프로젝트 수 및 사업비, 참여인력 등
 - 중간점검, 지자체 단위 성과관리 등을 통해 17개 시·도 상호발전 견인

□ 목표 및 추진전략

지향점	예술인	주민	지역	
	창작활동 지원	문화향유 증대	공간의 문화적 재창조	
목표	전국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‘우리 동네 미술’ - 전국 228개소에 각 1개 프로젝트 시행 -			
추진전략	실험	지역	자율	소통
	◆ 다양한 유형의 예술작품 시도, 새로운 미술인 참여	◆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, 지역요구 반영	◆ 지자체 자율성 존중,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	◆ 주민과 예술인 소통 기반
기대효과	◆ 지역의 공간문화 품격 제고 ◆ 지역 예술인 등 미술계 일자리 창출(8,500여개) ◆ 성과기록 공유(시행과정 및 유·무형 성과에 대한 온라인콘텐츠 제작)			

□ 사업내용

- (개요) 지자체별(기초 226개소, 특별자치시·도 2개소) 4억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시행
 - 주민소통, 참여로 “주민과 함께”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 운영
 - * (장소) ◦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(광장 등) ◦ 사회취약계층 지원시설(복지관 등)
 - 지역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(공원, 놀이터 등) ◦ 유희시설, 낙후된 도심 등
- (유형) ▲벽화, 조각, 회화, 미디어 아트 등 작품 설치형 ▲문화적 공간 조성 및 전시형 ▲거리 편의시설 조성 등 도시재생형 ▲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형 ▲지역 기록형(사진, 다큐멘터리) ▲다수유형 복합추진형 등
 - 제시된 유형 외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유형 개발·추진 가능

<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별 사례 >

유형	사례		
작품 설치 * 회화, 조각, 건축, 미디어 아트 등	 <p>이희경, <슈퍼맨>, 강원 영월 - LED 조명을 이용한 설치작품</p>	 <p>정태호 외, <풍당풍당>, 충북 음성 - 동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동요를 모티브로 한 설치작품</p>	 <p>손지희, 최성열, <품>, 강원 양양 - 양양의 연어이야기를 형상화한 설치작품</p>
공간 조성 및 전시 * 문화공간, 전시공간 조성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등	 <p>이성은, <휘파람 칠십리>, 제주 서귀포 - 낙후된 유희시설에 공공 전시공간 조성,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추진</p>	 <p><작은 미술관 밖 더 큰 미술관>, 경기 안산 - 큐브형 전시관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작가가 기록하여 그림일기 형태의 작품 전시 및 워크숍 진행</p>	 <p>강익중, <5만의 창> - 어린이 벽화 프로젝트로,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작품 설치 전시공간으로 운영</p>

<p>도시 재생</p> <p>* 스트리트 아트 등</p>	 <p>도원행, <벽, 다시태어나다>, 경기 부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쓰레기 투기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골목길에 다양한 작품 설치 	 <p><거별사탕길 만들기>, 서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범화 지역의 통행길을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 	 <p><서울 밤길에 드로잉 조심>, 서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골목 등 일상공간에서 사람들이 예술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드로잉 작품
<p>주민참여 공동체 활동</p> <p>* 소규모 활동 중심</p>	 <p>만아츠만엑츠, 서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,000개의 예술이 10,000개의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의 프로젝트로, 서울 성수동 골목에서 10,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고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 		

□ 예산현황

○ 예산 규모 : 총 94,800백만원

※ 국 비 75,860백만원(지자체경상보조 75,760백만원/민간경상보조 100백만원)
지방비 18,940백만원

구분	예산 편성기준	광역지자체별 국비 교부기준
사업비	<p>91,200백만원 (지자체 228개소×1개 프로젝트×400백만원)</p> <p>※ 국 비(80%) 72,960백만원 지방비(20%) 18,240백만원</p>	<p>기초지자체수×400백만원×80%</p>
사업운영 관리비	<p>3,500백만원 (17개 시도×23백만원×9개월)</p> <p>※ 국 비(80%) 2,800백만원 지방비(20%) 700백만원</p>	<p>(기초지자체수×400백만원×80%)×약 3.9%</p> <p>※ 사업비의 약 3.9%</p> <p>☞ 광역지자체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비 책정 필요</p>
사업총괄 운영비	<p>100백만원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</p>	

<참고> 전체 사업비 편성기준

- 사업비 : 912억원
 - (인건비성 경비) 사업비의 55%인 502억원
 - (작품제작 경비*) 사업비의 45%인 410억원
 - * 재료비, 작가상해보험, 커뮤니티 다과비, 교통비, 세무회계비용 등
- 사업운영 관리비 : 35억원
 - (광역시자체 별 월 운영 관리비) 23백만원
 - * 인건비 : 13백만원(팀장급 1명, 월 4백만원/직원 3명, 월 3백만원)
 - * 운영비 : 10백만원(사무기기 임차, 심의, 모니터링, 회의 운영 등)
 - ☞ 사업운영 관리비는 실제 소요에 따라 모든 관리주체(광역시/기초지자체, 사업주관처)가 배분하여 사용 가능

□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

- (추진체계) 문체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자체경상보조 교부 → 광역지자체 직접추진 또는 지역문화재단·기초지자체 등 재교부

유형 1	유형 2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문체부/문예위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자문위원회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광역자치단체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작가팀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문체부/문예위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자문위원회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광역자치단체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지역문화재단 등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작가팀</div>
유형 3	유형 4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문체부/문예위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자문위원회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광역자치단체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기초자치단체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작가팀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문체부/문예위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자문위원회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광역자치단체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기초자치단체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지역문화재단 등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전문가 자문단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작가팀</div>

* 제시된 유형 외 지자체별 특성에 맞춰 추진 가능

* 전문가 자문은 사업주관처 중심으로 진행, 문체부/광역시자체 차원의 자문은 요청 시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보완적 의미(자문은 예술성이 아닌 실행가능성 등에 초점)

○ (역할분담)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(역할 분할수행 가능)

문체부(주최)	한국문화예술위원회(협력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계획 수립 - 사업운영 지원 및 관리 - 예산 교부(광역지자체) - 자문위원회 운영 - 지자체 사업 설명회 - 사업 홍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안내서 마련(지자체용/작가팀용) - 권역별 미술인 대상 공공미술 이해 교육 - 작가팀 교육 지원 -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(전체 총괄) - 전문가 POOL 운영, 홍보 등

광역 지자체(주최) ※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경비 책정 필요	기초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(주관) ※ 광역지자체 직접수행 시 광역지자체 역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지자체 수요 조정 -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 취합·검토·교부요청/사업계획 변경 취합·검토·승인요청 - 사업비 교부, 정산 취합·검토·보고 - 주민 등 의견수렴 및 장소제공 지원 - 작품 등 활용방안 마련 -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(지자체 총괄) - 사업 홍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, 지역 미술단체 등 의견수렴 -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 - 작가팀 공모 선정 및 교육, 지원, 관리 -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- (기초지자체) 작품 사후관리 - 현장점검(사업 전 대상지 답사, 중간점검 등) -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(작가팀 지원) - 예산 관리, 사업 홍보 등

* (주관)은 '보조금 집행기관'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(광역/기초/지역문화재단)

작가팀(보조금 수령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행계획 수립 - 참여작가 등 구성, 운영 - 추진협의체(주민 등) 등 구성, 운영 - 프로젝트 진행 - 이행점검 및 진행보고, 아카이브 구축 - 결과보고서(실적, 정산) 제출 등

□ 사업일정(안)

○ 기본일정

- (6월) · 문체부(문예위) : 현장간담회, 지자체 회의 등 사전준비
- (7월) · 문체부 : 사업안내서 마련, 자문위원회 구성, 광역지자체 대상 업무협의(국장급) 및 사업설명회(담당자), 권역별 미술인 대상 공공미술 이해제고 교육 등
- 지자체 : 사업계획* 및 지방비 확보 준비

*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, 작가팀, 추진체계, 지방비 확보계획 등 포함

- (8월) · 지자체 등 : 주민 등 의견수렴,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, 작가팀 공모선정 및 교육,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신청, 지방비 확보 진행 등
 - 문체부 : 사업계획 승인 및 국비 교부
 - 작가팀 : 실행계획* 수립 진행
 - * 실현가능성 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절차 진행(사업주관처)
- (9월~12월) · 문체부/지자체 등 : 진행사항 점검 및 사업 지원
 - 작가팀 : 실행계획 확정 · 보고, 사업 진행
- ('21.1월 ~ 2월) · 작가팀 : 사업 진행 및 마무리, 결과보고서(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*) 제출
 - * 기초지자체 정산 → 광역지자체 검토·보고 → 문체부 17개 시·도 정산 검토·최종 확정
 - 지자체 등 : 사업평가(만족도조사 포함) 등 사업정리, 사업성과 보고회(작가팀 발표) 등

※ '21.3월 이후 문체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, 기자단 투어 등 추진 예정(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□ **항목별 탄력적 운용 사례** * 지자체 여건, 프로젝트 성격 등 고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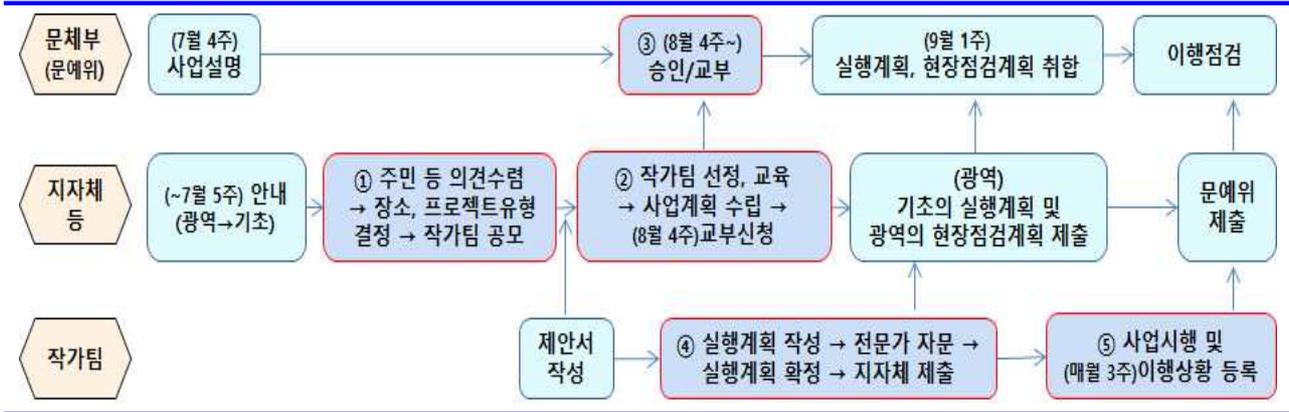
항목	사례 및 기준 (광역지자체 A 내 기초 a, b, c가 있는 경우)
대상지 (기초지자체)	- a의 여건 상 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,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에서 추가선정 가능 ☞ A 내에서 총 3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
프로젝트 수	- a의 여건 상 4억 사업비로 프로젝트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추진 가능 - a의 여건 상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,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에서 추가수행 가능 ☞ A 내에서 총 3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
프로젝트 사업비	- a의 여건 상 1개 프로젝트 수행에 2억만 필요한 경우, a 내에서 2억 프로젝트 1개 추가수행 또는 A의 조정으로 b 또는 c의 프로젝트에 2억 추가반영 가능 ☞ A 내에서 총 12억 사업비가 최종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
사업비 내 작품 제작경비 비율	- a 지역의 1개 프로젝트의 재료비는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45%를 책정하되, 프로젝트의 성격, 재료비 적정수준 여부 등을 감안, 5% 내외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☞ 프로젝트 성격 상 이를 초과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 사업 주관처 판단 하에 결정
참여작가 수	- a지역의 n개 프로젝트 참여작가 수는 최소 37명으로 하되(총 사업비 4억원 기준), 5% 범위 내 조정 가능 ☞ 일자리 사업임을 감안, A 내에서는 총 참여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
지역 예술인 참여여부	- a지역 프로젝트에 a지역 기반의 예술인 참여가 부족할 경우 b, c지역 예술인을 우선 선정하되, 전국 단위로도 확대 검토 가능(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지원)

2

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

□ 주요 업무절차

* 지자체별 여건 등에 따라 일부조정 가능



① **(지자체 등 사업주관처)** 의견수렴(주민, 지역미술인·단체, 문화재단 등) 이후 장소*, 프로젝트 유형(작품설치형 등) 결정 → 작가팀 공모

* 반드시 장소사용 승인서(내부결재 등) 확보 : 대상지 변경내용(사업 전·후 비교), 장소 임대 계약서(임대의 경우), 서약서(사용기간 동안 매도, 임대, 보수 등 금지) 등

② **(작가팀)** 결정된 장소 및 유형에 맞는 제안서 작성, 신청 → **(지자체 등 사업주관처)** 작가팀 선정, 교육 → **(기초지자체)** 제안서 토대로 사업계획서 수립, 광역지자체 제출 → **(광역지자체)** 사업계획서 취합·검토 후 국비 교부 신청서 제출

*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 주관처 대상으로 작가팀 운영 안내서 온라인 교육

③ **(문체부)** 사업계획 승인* 및 국비 교부

*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10월 초 일괄변경 승인(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변경은 제외)

④ **(작가팀)** 제안서 기반으로 실행계획 수립 → **(사업주관처)** 실행계획 전문가* 자문 → **(작가팀)** 실행계획** 확정 → **(지자체)** 광역에서 기초 취합해서 문체부에 확정된 실행계획 제출

* 지역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활용 가능

** 최종 실행계획서 기준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진행

- 항목 : 사업장소, 작품 규격 및 재료, 제작 및 프로그램 콘셉트·계획, 예산 등
- 절차 : 작가팀, 변경신청서 제출 → 사업주관처, 심사 후 승인 및 지자체 보고

- ⑤ **(사업주관처)** 의견수렴결과, 선정장소 등 기초상황 등록* → **(작가팀)** 매월 3주, 프로젝트 이행상황 등록* → **(사업주관처)** 등록상황 점검, 이상유무 지자체 보고 → **(광역지자체)** 매월 4주, 개별 등록상황 최종점검 및 이상유무 취합, 문예위 보고

*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공미술포털 사이트(www.publicart.or.kr) 아이디 부여 후 등록

◆ **작품 제작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**

- (심의) 작품 제작 관련 지자체 소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이행
- (구조안전) 작품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 제출 요구
- (보험) 작품제작 경비 활용하여 **상해보험 가입 필수**
 - *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작가팀 책임
 - * 제작 후 2년 이내 부실 시공/제작에 의해 파손된 작품은 작가비용으로 보수
- (기타) 사업주관처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방안(대인, 대물) 수립

3 작가팀 구성 및 운영

◆ 기본적으로 4억원 기준, 1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7명 참여

- * 지자체 여건, 프로젝트 성격 등에 따라 참여 미술가 인원 5% 범위 내 조정 가능
- * 프로젝트 수는 작가팀 수를 기준으로 산정

□ **작가팀 선정 및 구성**

○ (작가팀 공모) 책임작가 또는 기획자 등 대표자 선정 필요

- 대표자는 ▲고유번호증/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요 ▲작품제작은 하지 않고 프로젝트 총괄, 기획, 운영(공동목표 구상, 작가 화합 등)에 집중하는 방안 권장
- 참여작가 등 구성원은 전부 또는 일부인 상태로 공모신청 가능(일부 구성 시 실행계획 완성 전까지 전체 구성 완료)

○ (선정위원회 구성) 지역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필요

○ (작가 참여) 프로젝트 중복참여 불가*, 장애미술인의 참여 노력

* 중복참여 불가, 위반 인지 시 참여기회 박탈 및 기 지급된 사례비 회수 등 사전 고지 → 중간점검 및 정산 시 최종점검

◆ 공모 시 표준화된 '사업 기본정보' 및 '안내·주의사항' 제공(변경불가)

① 사업 기본정보

- 사업명 : 공공미술 프로젝트 '우리 동네 미술'
- 주 최 : 문화체육관광부, 17개 광역자치단체
- 주 관 :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
- 협 력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② 안내·주의사항

- 동 사업은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, 미술가 등 사업 참여 인력은 1개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향후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2개 이상 사업 참여가 확인되면 사례비 전액을 반납 조치 예정으로 개인의 사전확인 필요

○ (작가 자격) 미술 관련 작가 등
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 미술인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 사업 수혜 미술인
- 미술 관련 협·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
- 미술 관련 학부 졸업생, 대학원생
-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

* 활동경력(학부, 전시 및 프로젝트 참여내역 등 기재)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

◆ 일자리 창출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제외

* (예시) 교수, 교사, 영리단체 관계자 등 직장인과 대학생 제외

○ (작가팀 구성) 사업비 4억원 기준, 총 37명 수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, 프로젝트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
- 지역미술인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지역미술가 중심으로 팀 구성하되 외부 미술가 포함 가능

*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만큼 약 8,500여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(228개소 × 37명)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 차원의 총 참여자수 유지 필요

- 행정 지원인력 1명 이상 포함(e나라도움시스템 사용, 이행점검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등)

- * 행정 지원인력은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, 회계 정산 유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방안 권장(이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)

◆ 대표자와 행정 지원인력 간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

- (계약/보험) 근로계약서 작성/4대 보험 등 원천징수
- (임금계산/휴가) 최저임금, 가산임금, 주휴수당 등 포함/연차유급휴가 부여
- *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, 관련 경비는 사업비 내 총당

◆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, 행정 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 조치사항 이행

- * 작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: 예술가로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, 대표작가 등에게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

○ (지원방식) 사업 주관처에서 작가팀으로 민간보조

- 실행계획서(계약서 포함)에 작가별 역할, 작업 기간·일수, 비용지급 등 필요한 세부내용 기재 → 팀원 전원의 동의서 서명날인

*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, 최소 1개월 이상 참여 권장

- 월별 작업대장 작성(대표자, 사업주관처 확인 서명)을 통한 증빙, 회계 사무소의 회계검증 필수 진행

○ (작가 비용지급) 사업비(4억원)의 55%(필요 시 5% 내외 범위 내 조정가능)를 활용, 작가비(아티스트피)와 인건비성 경비(사례비)로 구분하여 지급

◆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, 제작여건 등에 따른 작가 비용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포함

- * 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, 작가비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의견 제시

- 작가비(아티스트피)는 대표자, 참여작가 대상으로 지급하며, 자율적으로 지급대상과 한도 설정

- 인건비성 경비(사례비)는 대표자, 참여작가, 보조작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, 1일 최소 9만원 ~ 최대 30만원의 지급한도 준수

○ (사업주관처의 작가팀 교육) 사업 추진 관련 사항과 함께 청렴이행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* 교육(관련 서약서 징구) 등 일반 유의사항 안내

- * 대표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과정 이수(수료증 제시), 팀원은 문예위 제공 교육자료 숙지 필요

4

주민 참여

- ◆ 지자체별 여건,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소규모 모임, 온라인 활용 등 탄력적으로 운영

□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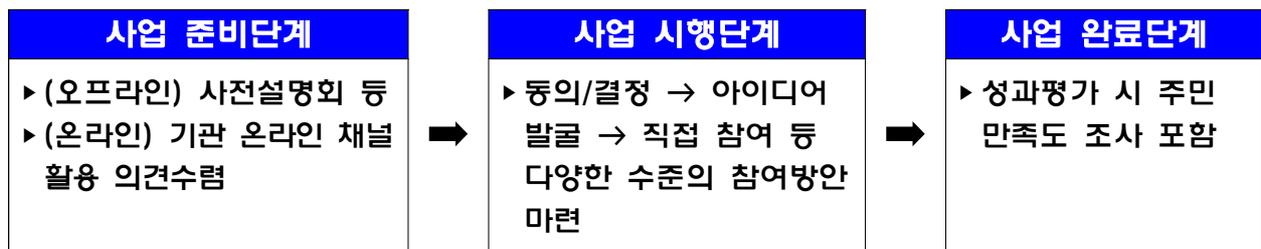
- (언론보도에서 부각된 쟁점) 부작용*이 있는 마을벽화사업을 예술 뉴딜로 포장, 즉흥추진 비판

* (사례) 흉물 제작,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

- (해소방안) 주민소통, 참여를 통해 “주민과 함께”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추진

* ◦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 참여, 주민 의견 수렴 진행 ◦ 사업 성격별로 주민과의 공동작업, 공동체 프로그램 연계 등

□ 주민참여 방식



- (지자체-사업주관처) 주민 대상 사전설명회, 장소 및 프로젝트 유형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, 기관 SNS 등 온라인 채널 활용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, 주민자치회 대표 등 주민동의, 성과평가 시 주민만족도 조사* 등

* 주민 대다수의 중요한 요구사항은 사후 유지보수 시 반영 추진

- (작가팀)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작품 등 구현, 주민과 함께 작품 공동 제작,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

*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

- ◆ 공공미술포털 사이트(www.publicart.or.kr) 활용, 온라인으로 등록 및 관리
 - * 시행과정 및 유무형 결과의 기록화를 통해 성과 확산 및 온라인 미술향유 기반 콘텐츠 활용

□ 온라인 이행점검

- (기초상황 등록) 사업주관처,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선정장소 등(사진 포함) 등록
- (정기 월간보고)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문예위로 통합보고(매월 4주)
 - * ① <작가팀(행정 지원인력 담당)> 공공미술 포털 등록(월간보고서, 사진, 영상, 상세일지 등) → ② <사업 주관처> 작가팀의 등록상황 점검, 이상유무 등 포털 등록 → ③ <광역지자체> 종합점검 및 문체부(문예위) 결과공문(양식 붙임) 제출
- (월간보고 점검) 문체부, 문예위 점검 및 자문회의 개최
 - 월간보고 내용 검토 등 모니터링 → 필요 시 자문의견 제공

□ 현장점검

- (사업 주관처) 사업 전 대상지 답사, 중간점검*, 최종점검** 시행
 - * (중간점검) 프로젝트 진행 70% 시점에서 최종 실행계획서와의 일치도, 작품별 세부사항(장소, 규격, 재료 등), 변경신청 승인내용 등 점검
 - 중간점검 승인받은 이후 중도금 지급가능(작가팀, 중도금 교부신청서 제출)
 - ** (최종점검) 프로젝트 진행 100% 시점에서 진행, 승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
- (광역지자체) 자체 현장점검계획* 수립을 통해 민간전문가 동행 하에 현장점검 시행
 - * 자체 현장점검계획(최종 실행계획서 제출과 병행) 및 점검결과(점검 10일 이내) 문체부(문예위) 제출
- (문체부) 문예위, 민간전문가 동행 하에 현장점검 시행

□ 성과 관리

- (지표개발) 일정한 기준 적용을 위해 문체부 등에서 평가영역, 평가 지표 등 개발
 - * 참여 작가수, 주민 만족도, 실행계획과의 일치성 등을 기본으로 평가요소를 개발, 추후 안내 예정
- (평가시행)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*, 사업 주관처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수행 직후 평가 실시
 - * 지자체 여건 및 프로젝트 형태 등에 따라 일부 조정·탄력적으로 운영

◆ 전체 순위 매김 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객관적 성과 확인을 위해 시행

□ 작품 사후관리

- 작품 제작 완료 직후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(저작권은 작가팀 보유) 함에 따라 작품 사후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
- 작품 보존기한*은 최소 3년으로(이에 맞춰 장소사용 승인서 체결), 이후에는 철거나 폐기 등 가능
 - 사후관리 보수는 작품을 제작한 작가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하게 작가팀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 진행 가능
- *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사후관리비 예산편성 필요

□ 아카이브 구축 * 사업비로 아카이브 구축 가능(행정지원인력 우선활용 고려)

-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성과물 등에 대한 온라인 자료 축적·공유
 - 월간보고 및 사업결과물*(사업기간 내, 완료 후 총 2회) 활용
- * 디지털 콘텐츠(공동체 활동, 진행과정 및 완료 후 변화 등에 대한 5분 내외 영상물), 사진자료(20매 내외) 등
-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디지털 지도, 홍보 콘텐츠 등

□ 사전 홍보

- (추진체계) 민간 지원체계로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7월 중)
- (사전교육) 미술가 대상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전교육 시행(문예위, 7월 말)

□ 사업설명회 및 현장점검

- (사업설명회)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(7월 4주)
- (현장방문) 대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현장 방문('20년 하반기)

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

- (콘텐츠 제작) 공공미술 프로젝트 디지털 지도 제작('21년 상반기)
- (아카이브) 공공미술 포털(문예위) 활용, 사업별 진행과정·성과물 게시
- (기타) 다양한 지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

* (사례) 지자체별 대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선정 → 프로젝트별 진행과정 및 완료 후 변화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 → 유튜브 채널 개설, 콘텐츠 게시

□ 기타 * 관련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- (기자단 투어) 권역단위 등 기자단 투어('21년 상반기)
- (발표대회) 우수사례 경진대회('21년 상반기)
- (보도자료 배포) 우수사례 소개 등 주요 계기별 보도자료 배포